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에서 위판장·선착장 등을 삭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,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허용행위,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간의 결정기준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하는 등으로 「산림조합법 시행규칙」 등 4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농림축산식품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67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2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7항제7호 중 “법령안·법인정관”을 “소관 법령·행정규칙·법인정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제13호 중 “외국인력지원센터”를 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제7호 중 “사업장관리시스템”을 “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고용노동부 기관메일 및”을 “고용노동부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,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제7조제8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·적용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단서 중 “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

원의 직급별 정원은”으로 하고, “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”으로 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정책실 밑에 설치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

●해양수산부령 제375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2일

해양수산부장관 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경비과·상황센터”를 “경비과·종합상황실”로, “경비과장·상황센터장”을 “경비과장·종합상황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황센터장”을 “종합상황실장”으로 한다.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상황실장”을 각각 “종합상황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상황실장”을 “종합상황실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상황실)”을 “(종합상황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상황실장”을 각각 “종합상황실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2명(9급 2명)”을 “4명(5급 또는 연구관 1명, 7급 1명, 9급 2명)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“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”을 “(평가대상 정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직 및 정원”을 “정원”으로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